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소개

- 임금검색시스템을 중심으로 -

—
전영은 (前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1. 제공목적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통계, 매뉴얼, 언론·보도자료, 임금체계 개선 및 근로시간 우수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의 ‘임금수준’ 및 ‘직급별 임금정보를 포함한 임금수준’ 검색 메뉴에서는 사업체 규모, 산업, 직업, 직급, 학력, 연령, 성별, 근속연수의 다양한 검색조건을 설정하여 기업, 구직자, 노사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임금정보(임금수준)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임금정책 수립 및 평가를 돕는 역할을 함.

2. 제공형태

-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인터넷 주소 : www.wage.go.kr/category : 임금수준, 직급별 임금정보를 포함한 임금수준

3. 제공방식

- 본 시스템에서는 검색조건 중 직급을 포함하지 않은 ‘임금수준’과 직급을 포함한 ‘직급별 임금정보를 포함한 임금수준’의 2가지 방식으로 임금정보를 제공함.
- ‘임금수준’ 검색화면에서는 사업체 규모, 산업, 직업, 학력, 연령, 성별, 근속연수의 7가지 검색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음.
- 검색조건은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조건별 세부사항을 선택·검색할 수 있음.

〈임금수준 검색화면〉

검색조건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직업별 학력별 연령별 성 별 근속년수

▶ 사업체 규모별 5~29명 ▼

▶ 산업별 산업분류보기 ▶

제조업 ▼

식품 제조업 ▼

▶ 직업별 직업분류보기 ▶

▶ 학력별

▶ 연령별 30~34세 ▼

▶ 성별

▶ 근속년수

* 검색조건이 많을 수록 일치하는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검색조건에 선택된 박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해당 Data가 없는 경우입니다.

Q 연간임금총액 원

진단하기 ▶

※ 연간임금 = 정액급여 (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 + 특별급여 (고정상여금, 변동상여금, 성과급 등)
※ 초과급여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제외

- ‘직급별 임금정보를 포함한 임금수준’은 ‘임금수준’의 검색조건에 직급을 포함한 8가지의 조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직급별’ 검색조건을 선택할 시에는 ‘직업별’ 검색조건을 먼저 선택해야 검색이 가능함.

〈직급별 임금정보를 포함한 임금수준 검색화면〉

검색조건 사업체 규모별 산업별 직업별 직급별 학력별 연령별 성 별 근속년수

▶ 사업체 규모별 100~299명 ▼

▶ 산업별 산업분류보기 ▶

▶ 직업별 직업분류보기 ▶

사무 종사자 ▼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

▶ 직급별 5단계 ▼ 3단계 ▼

* 첫 번째 콤보박스 : 회사의 총 직급단계 / 두 번째 콤보박스 : 임금정보를 검색할 직급 단계 (예시) 5단계 직급단계(ex. 사원-머리-차장-과장-부장)를 가진 기업의 3단계 직급(ex. 차장)의 임금정보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5단계 → 3단계 순서로 콤보박스 선택
* 직급별 임금은 사업체규모 100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학력별

▶ 연령별

▶ 성별

▶ 근속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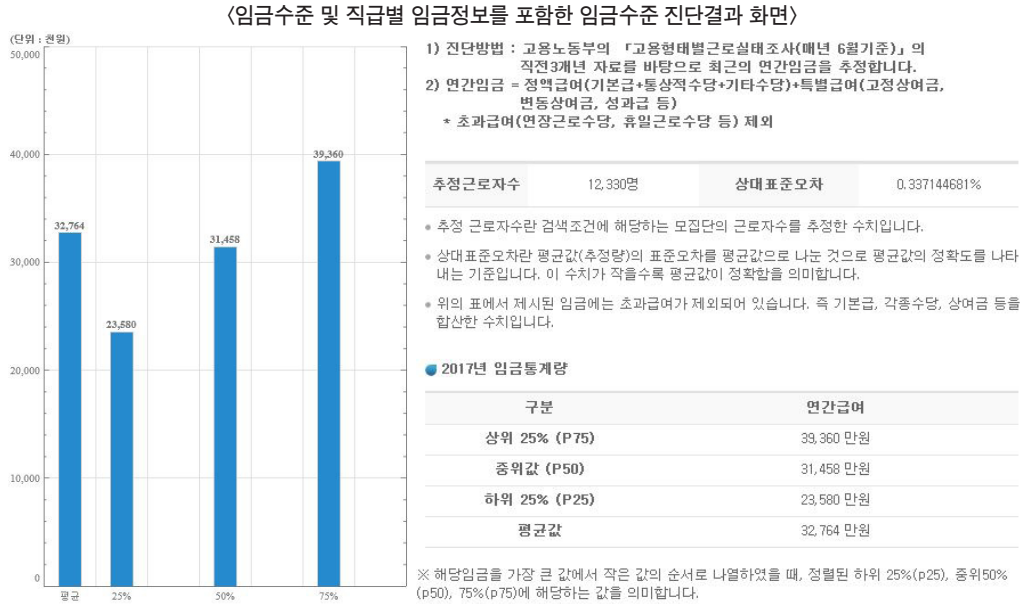
* 검색조건이 많을 수록 일치하는 결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검색조건에 선택된 박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해당 Data가 없는 경우입니다.

Q 연간임금총액 원

진단하기 ▶

※ 연간임금 = 정액급여 (기본급+통상적 수당+기타수당) + 특별급여 (고정상여금, 변동상여금, 인센티브 등)
※ 초과급여 (연장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제외

- 진단결과 제공되는 임금정보는 연간임금으로, 평균값뿐만 아니라 상위 25%(P75), 중위값(P50), 하위 25%(P25) 등 다양한 통계값을 제공하며,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모집단의 추정 근로자 수와 상대표준 오차를 제공함.



4. 제공내용

1) 임금정보의 원자료 소개

- 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임금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원자료로 이용하고 있음.

* 임금수준 원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5~2017년 (조사 직전 3개년 자료 사용)

* 직급별 임금정보를 포함한 임금수준 원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7년 (조사 직전 1개년 자료 사용)
- '직급'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시범조사 항목으로 1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란

-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양한 고용형태로 구분하고, 이들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파악하는 자료
- 조사대상 : 임금근로자 1인 이상 민간부문의 전 산업 중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약 33,000개 표본사업체와 자영자, 고용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 조사기준 : 매년 6월

2) 제공통계 임금정보 소개

-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공표까지 약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계적 시의성이 낮은 임금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음.
 -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매월 노동수요측의 종사자수, 빈일자리수,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계적 시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보다 상세하고 시의성 있는 임금정보의 제공을 위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표준산업중분류별 임금증감률을 연계하여 가장 최근의 임금수준을 제공함.
- * 사업체노동력조사 대상 : 고용부문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25천 개 표본사업체(고용부문),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한 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13천개 표본사업체(근로실태부문)

3) 제공변수 소개

〈임금수준〉

제공변수명	제공변수 항목
사업체 규모	5~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산업	대분류, 중분류
직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력	고졸 이상, 전문대졸, 대졸 이상
연령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성별	남자, 여자
근속연수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세 미만, 25년 이상

〈직급별 임금정보를 포함한 임금수준〉

제공변수명	제공변수 항목
사업체 규모	100~299인, 300인 이상
산업	대분류, 중분류
직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14단계, 15단계
학력	고졸 이상, 전문대졸, 대졸 이상
연령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성별	남자, 여자
근속연수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세 미만, 25년 이상

- ‘임금수준’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전일제(full-time)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급별 임금정보를 포함한 임금수준’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전일제(full-time)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임금수준’ 및 ‘직급별 임금정보를 포함한 임금수준’의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을 기준으로 함.
- 직급은 총 1~1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체의 직종(또는 직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직급 단계 중 사용자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를 의미함.
(예시) 5단계 직급단계(ex. 사원-대리-차장-과장-부장)를 가진 기업의 3단계 직급(ex.차장)의 임금정보를 검색하고자 한다면, 5단계 → 3단계 순서로 콤보박스를 선택

4) 제공임금 내용

- 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임금정보는 초과급여(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를 제외한 연간임금 = 정액급여(기본급+통상적수당+기타수당) + 특별급여(고정상여금, 변동상여금, 성과급 등)로 구성되어 있음.
 - (1) 정액급여 :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사업체의 급여규칙 등으로 정상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지급액, 지급조건,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서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 등을 의미함
 - (2) 특별급여 :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로서 상여금, 성과급, 임금 인상 소급분, 학자금(대출금 제외) 등을 의미함
 - (3) 초과급여 : 정상근로시간 외 근무로 인해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의미함

- 임금정보의 신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원자료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제공될 임금정보의 최소기준을 '표본 근로자수 60명 이상'으로 기준을 세워 이에 해당하는 임금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음.

5. 관련문의

-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 044-287-6553